



제433회국회(임시회)
제2차 교육위원회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 외국대학 교원에 대한 겸직 특례 신설 〉

■ 강경숙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6863호)

2026. 4.

교 육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최선영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강경숙의원 등 10인
2. 발의연월일 : 2026. 2. 13.
3. 회부연월일 : 2026. 2. 19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학이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이 경우 교육공무원의 신분이 되어 「국가공무원법」에 따라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 대상이 되고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라 겸직이 제한됨.

그런데 대학의 교육·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 교원을 초빙하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겸직금지 등 조항은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입 과정에서 제도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.

이에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우수인재의 유치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대학의 교육·연구 역량 강화와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3 신설).

Ⅲ. 검토의견

가. 개정안의 요지

-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외국의 대학에서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국내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겸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[개정안 조문대비표]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9조의3(외국대학 교원의 겸직에 관한 특례) ① 대학의 장은 외국의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(이하 “외국대학”이라 한다)에서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·부교수 및 조교수로 임용하는 경우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겸직허가는 교육·연구의 발전 및 국제협력에 기여하고 학생의 교육·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겸직허가의 대상·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나. 검토의견

- 최근 AI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해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음. 그런데 현행 「국가공무원법」 등의 겸직금지 규정 등이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입에 제도적인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음.
- 구체적으로 「교육공무원법」 제10조의2에 따르면, 대학은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,¹⁾ 이에 따라 국·공립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된 외국인은 교육공무원의 신분이 되어 공무원으로서 「국가공무원법」도 함께 적용됨.

그런데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4조는 공무원에 대하여 ‘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’를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이 된 외국인 교원도 해당 규정이 함께 적용됨.²⁾ 사립대학 교원의 경우에도 「사립학교법」 제55조에 따라 국·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복무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이들도 국·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겸직이 금지됨.³⁾

이로 인하여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

1) 「교육공무원법」 제10조의2(외국인 교원) 대학은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2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4조(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)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.

3) 「사립학교법」 제55조(복무)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·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기 위해서는 외국대학에서 퇴직하고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될 수 밖에 없음. 이는 우수한 외국대학의 교원이 국내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.

- 이에 개정안은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우수인재의 유치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.

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규제에 대한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 교원을 겸직하는 것이 용이해짐에 따라 외국대학의 우수인재를 초빙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- 다만, 최근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「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」이 우리위원회에서 의결(2026. 3. 10.)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는 바, 최근의 법률안 개정현황을 고려하여 동 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.⁴⁾

문 의 처

02)6788-5188

4) 외국대학의 교원에 대하여 현행법상 겸직금지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의 「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: 제4442호, 서지영의원 대표발의)과 「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: 제16272호, 박성준의원 대표발의)이 통합·조정되어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됨.

<참고자료 1> 「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」의 친구조문대비표

참고 1

「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」의 신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19조의3(외국대학 겸직에 관한 특별) ① 외국에 소재지를 둔 대학(이하 이 조에서 “외국대학”이라 한다)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 대학에 임용된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·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, 절차 및 겸직허가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